

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

법무부는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▣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

- ▣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.
- ▣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,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.
- ▣ 국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됩니다.
 -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
- ▣ 출국 후 비자 발급 신청 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.

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합니다.

- ▣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.

※ 자진출국 신고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4시간 전에는 공항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.

문의처

- ▣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에 문의 바랍니다.

- ▣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

- 인천공항 : ☎ 032-740-7391~2 - 김포 : ☎ 02-2664-6202
- 김해 : ☎ 051-979-1300 - 인천 : ☎ 032-891-9925, 032-8777-9941

※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

법무부

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